|  |  |  |
| --- | --- | --- |
|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정 잠행규정**  **실시세칙**   1. **총 칙**   **제1조** 승용차의 수량의 합리화, 질서정연한 증가 및 교통체증의 효과적인 완화,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의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정 잠행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는 승용차에 대해 수량 조절과 배정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소형 버스의 연 증가수량과 배정비례는 시 교통행정주관부서와 시 발전개혁위원회 및 치안과 교통,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승용차의 수요상황과 도로교통 및 환경적재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정부의 각 해당 부서는 본 시의 승용차 연간 조절목표를 실현하게 해야 한다.  **제3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관, 사업단체,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통칭함)과 개인이 본 시의 승용차 지표(이하’지표’라 약칭함)를 취득하고자 할 때 추첨(摇号)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본 시의 기관과 정부에서 전액지급을 하는 비영리 사업단체는 공무용 차량지표를 더는 늘리지 않는다.  영업용 승용차 지표는 단독으로 배정하고 세부적인 배정방식은 따로 제정한다.  **제4조** 시 교통행정주관부서에서 승용차의 수량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승용차의 수량조정 정책과 조치를 실행한다.  치안, 국세, 지세, 민정, 사법, 재정, 인력사회보장, 상무, 공상, 품질감독 등 관련 부서와 구(현) 정부는 규정에 따라 직책을 분담하고 해당 관리업무를 시행한다. 감독부서에서는 각 행정주관부서의 직책 실행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시 승용차지표조정관리기구(이하 ‘지표관리기구’라 약칭함)는 지표 신청의 귀납과 심사결과의 공포를 책임지고 동시에 번호표 배급의 구성과 공시 등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지표의 배정 액수는 연도에 따라 확정하며 해를 넘겨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지표는 매월 1회 배정하며 단위 지표는 매 2개월에 한번 배정한다. 매번 배정을 미완성한 지표 배정 액수는 차례대로 다음 번 배치로 이월한다.  **제6조** 개인지표 한도는 연간 배정 액수의 88%를 차지하고 운송영업용 승용차의 지표 한도는 연간 배정 액수의 2%를 차지하며 기타 단위의 지표 한도는 매년 배정액수의 10%를 차지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  **제7조** 단위와 개인의 지표 신청은 이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코드를 취득한다.  (2) 심사를 거쳐 합격 후 신청코드의 유효를 확인 한 다음 추첨에 참가한다.  (3) 추첨 방식을 통해 지표 코드를 취득한다.  **제8조** 이하 단위에서 지표를 신청할 때 이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업에서 유효한 영업허가증(혹은 공상등록증)을 구비하고 조직기구코드증서와 세무등기증서 및 지난해 본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총액이 5 만 위안(5 만위안 포함)이상인 경우.  (2) 정부에서 전액 지급하지 않는 사업단체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유효한 조직기구 코드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제9조** 이하 단위에서 코드 수량을 신청할 때 이하 규칙에 따라 확정한다.  (1) 기업에서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영업세의 총액이 5만 위안(5만 위안 포함)이상 인 경우 매년 1개의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50만 위안이 증가할 때마다 1개의 코드가 증가한다. 그러나 한 해에 신청할 수 있는 코드의 총수량은 8개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부에서 비 전액 지급하는 사업단체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매년 1개의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주소지가 본 시에 있는 개인은 본 시에 본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자동차면허증을 소지하고 지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본 시에 있는 개인은 아래를 포함한다.  (1) 본 시에 호적이 있는 인원.  (2) 북경 주재 부대의 현역 군인과 현역 무장경찰.  (3)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북경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홍콩-마카오-대만주민, 및 화교와 외국 국적인 인원.  (4) 유효한 ‘북경시근무거주증’을 소지한 본시에 호적이 없는 인원.  (5) 본시의 유효한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연속 5년(5년 포함) 이상 본 시에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본 시 호적이 아닌 인원.  자영업자가 지표를 신청할 때 개인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지표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각 구(현)정부에서 설치한 대외사무 민원창구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지표관리기구는 대외창구에서 수리 한 지표신청의 귀납을 책임진다. 아울러 매월 8일 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의 정보를 분류하여 치안,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품질감독, 국세와 지세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발송하여 심사한다.  시 치안기관의 인구관리부서에서 개인의 신분정보를 심사하고 시 치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홍콩-마카오-대만주민, 화교, 외국인에 대한 신분정보와 북경 주재정보를 심사하며 시 치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정보 및 개인의 면허증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하고 국세, 지세부서에서 납세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한다. 품질감독부서에서 조직기구의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하며 인력사회보장부서에서 본 시 호적이 아닌 인원에 대해 ‘북경시근무거주증’ 정보와 사회보험 납부 정보를 책임지고 심사한다.  본 시의 관련 부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접수한 후 8개 근무일 이내 정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지표관리기구에 회답한다.  본 시의 해당 심사부서에서 상급 부서에 제청하여 협력심사를 요구할 때 상급부서의 심사시간은 위 조항의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지표의 취득과 사용**  **제13조** 지표관리기구는 매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효코드를 공포한다.  심사를 거쳐 무효코드로 인정될 경우 지표관리기구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원인을 설명한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의견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사결과가 합격일 경우 심사부서는 지표관리기구에 재심사 의견을 피드백하고 지표관리기구는 이를 다음 번 추첨에 포함시킨다.  **제14조** 지표관리기구는 매월 26일 추첨을 진행하고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공증하며 추첨 결과와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통지서는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 공포한다. 추첨 시간 또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 지표관리기구는 사전에 이를 공포한다.  **제15조** 신청인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 혹은 전화방식을 통해 추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승용차의 배치지표확인통지서는 신청인이 직접 다운받아 인쇄하거나 지표관리기구의 대외창구에서 수령하고 이를 지표증명문서로 간주한다.  단위와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표의 유효코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추첨으로 이월한다. 단위에서 지표의 유효코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류하고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신청한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추첨 참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유효코드는 추첨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제16조** 단위와 개인은 지표를 취득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위와 개인이 차량취득세 및 취득세 서류 전이 수속을 밟거나 중고차 판매영수증의 검증, 차량의 증여공증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할 때 유효한 승용차 배치지표 확인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세 관련 부서에서 차량취득세의 완납증명서를 심사 발급하거나 면세 증빙 혹은 본 시로 차량의 취득세 문서를 이전하는 경우, 공상부서에서 중고차매출전표를 검증하는 경우, 공증기구에서 차량 증여에 대한 공증을 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 통지서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관련 어음 뒷면에”지표 취득”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승용차 등록 신청, 등기 이전 혹은 본 시로 전입하는 등기 변경을 신청할 때 치안기관의 교통관리부문은 차량의 취득세납부증명 혹은 면세 증빙, 중고차 매출전표, 차량 증여공증서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분별하여 검사한다.  **제17조** 단위와 개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를 판매 혹은 폐기 한 후 승용차 지표갱신이 필요한 경우(이하 ‘지표 갱신’이라 약칭함) 추첨에 참가할 필요 없이 직접 지표의 갱신을 신청하고 승용차의 지표갱신 통지서를 지표갱신 증명문서로 한다. 갱신된 지표는 취득 날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지표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표관리기구는 치안기관교통관리부서에서 제공한 판매, 폐기차량 이전, 등록 정보 말소 등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대조 심사하고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지표 갱신 확인 통지서를 발부한다.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요구는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18조** 신청정보를 심사하고 지표 증명에 대한 검사를 책임지는 관련 부서는 본 세칙의 업무 분담과 업무 실행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의 심사표준, 업무 절차 및 운영방법을 제정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본 세칙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수속의 처리 직책을 이행할 경우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다.  **제19조** 그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신청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지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요구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적발하는 권리가 있다. 지표관리기구, 각 심사부서 및 감독부서는 사회에 신고전화번호를 공고하고 적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감독의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허위정보나 문서를 제출하고 승용차의 배치지표 확인통지서와 승용차 지표갱신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련 심사부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지표관리기구로 피드백하고 지표관리기구는 해당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지표 혹은 갱신한 지표는 회수해야 하며 3년 이내 해당 신청인의 지표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5장 부 칙**  **제21조** 이하 나열한 것은 본 세칙의 용어 해석이다.  (1) 승용차는 소형, 미니 승객수송 자동차와 시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기타 수량조정이 필요한 차종이다.  (2) 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운행증>에 등기된 사용 용도가 ‘임대여객운수’, ‘임차여객운수’ 또는 ‘교육용’인 승용차이다.  (3) 유효한 자동차면허증은 치안기관의 교통관리부서에서 심사하고 발급한 승용차운전면허증이다.  **제22조** 법원의 판결이나 판정으로 인한 원인 또는 개인의 혼인, 상속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미 등록된 승용차는 본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이전 등기를 처리한다.  본 세칙이 실행하기 전에 차량판매 경영자와 고객이 승용차의 예약판매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예약금을 수취하고 규정된 기간 내 상무부의 해당 부서에 서류를 등록 접수한 경우는 본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세칙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외국인의 차량을 입국 신청한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 본 세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지표관리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북경시교통위원회  북경시공안국  북경 발전과개혁위원회  북경시감찰국  북경시민정국  북경시사법국  북경시재정국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북경시환경보호국  북경시상무위원회  북경시국가세무국  북경시지방세무국  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  북경시품질기술감독국  2010년 12월 23일 |  | **北京市小客车数量调控暂行规定**  **实施细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实现小客车数量的合理、有序增长，有效缓解交通拥堵状况，降低能源消耗和减少环境污染，根据《北京市小客车数量调控暂行规定》制定本细则。  **第二条** 本市对小客车实施数量调控和配额管理制度。  　　小客车年度增长数量和配置比例由市交通行政主管部门会同市发展改革、公安交通、环境保护等相关行政主管部门，根据小客车需求状况和道路交通、环境承载能力合理确定，报市政府批准后向社会公布。政府各有关部门应当落实本市小客车年度调控目标。  **第三条** 按照公开、公平、公正的原则，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及其他组织(以下统称单位)和个人需要取得本市小客车指标(以下简称指标)的，应当通过摇号方式无偿取得。  　　本市机关、全额拨款事业单位不再新增公务用车指标。  　　营运小客车指标单独配置，具体配置方式另行制定。  **第四条** 市交通行政主管部门负责小客车数量调控的统筹协调工作，并组织实施小客车数量调控的政策、措施。  　　公安、国税、地税、民政、司法、财政、人力社保、商务、工商、质监等政府相关部门和区（县）政府按照规定的职责分工，做好相关管理工作。监察部门负责对各行政主管部门履职行为的监督检查。  　　市小客车指标调控管理机构（以下简称指标管理机构）负责指标申请的归集、审核结果的公布、摇号的组织和公示等工作。  **第五条** 指标配额按年度确定，不得跨年度使用。  个人指标每月配置一次，单位指标  每两月配置一次，每次未配置完的指标配额顺延至下次配置。  **第六条** 个人指标额度占年度指标配额的88%，营运小客车指标额度占年度指标配额的2%，其他单位指标额度占年度指标配额的10%。  **第二章 申请及审核**  **第七条** 单位和个人申请指标按照以下程序进行：  　　（一）提出申请，获取申请编码；  　　（二）经审核合格后，确认申请编码为有效编码，参加摇号；  　　（三）通过摇号方式获得指标编码。  **第八条** 下列单位申请指标应当符合以下条件：  　　（一）企业具有有效的营业执照(或工商登记证)、组织机构代码证书和税务登记证书，上一年度在本市缴纳入库增值税、营业税总额5万元(含)以上；  　　（二）非全额拨款事业单位、社会团体及其他组织具有有效的组织机构代码证书。  **第九条** 下列单位申请编码的数量按照以下规则确定：  　　（一）企业上一年度缴纳入库增值税、营业税总额合计在5万元(含)以上的每年可以申请1个编码，每增加50万元可以增加1个编码，但年度申请编码总数不得超过8个。  　　（二）非全额拨款事业单位、社会团体和其他组织每年可以申请1个编码。  **第十条** 住所地在本市的个人，名下没有本市登记的小客车，持有效的机动车驾驶证，可以申请指标。住所地在本市的个人包括：  　　（一）本市户籍人员。  　　（二）驻京部队现役军人和现役武警。  　　（三）持有有效身份证件并在京居住一年以上的港澳台居民、华侨及外籍人员。  　　（四）持有有效《北京市工作居住证》的非本市户籍人员。  　　（五）持有本市有效暂住证且连续五年(含)以上在本市缴纳社会保险和个人所得税的非本市户籍人员。  　　个体工商户申请指标的，按照个人的有关规定执行。  **第十一条** 申请指标的单位和个人，可以直接在指定网站上填写申请表提出申请，也可以到各区(县)政府设置的对外办公窗口提出申请。  **第十二条** 指标管理机构负责归集对外办公窗口受理的指标申请，并于每月8日前将未经审核的申请人信息分别发送到公安、人力社保、质监、国税、地税及其它相关部门进行审核。  　　市公安机关人口管理部门负责审核个人身份信息；市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负责审核港澳台居民、华侨、外籍人员的身份信息和在京居住信息；市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负责审核车辆信息以及个人的驾驶证件信息；国税、地税部门负责审核纳税信息；质监部门负责审核组织机构代码信息；人力社保部门负责审核非本市户籍人员的《北京市工作居住证》信息和社会保险缴纳信息。  　　本市相关审核部门在接收到申请人信息后8个工作日内完成对信息的审核，并将审核结果反馈指标管理机构。  　　本市相关审核部门需要提请上级部门配合审核申请人信息的，上级部门审核时间不计入前款规定的审核期限。  **第三章 指标取得和使用**  **第十三条** 指标管理机构每月在指定网站上分批公布有效编码。  　　经审核认定为无效编码的，指标管理机构在指定网站上说明原因。申请人对审核结论存有异议的，可以向相关审核部门提出复核申请。复核合格的，审核部门向指标管理机构反馈复核意见，由指标管理机构将其纳入下一次摇号基数。  **第十四条** 指标管理机构每月26日组织摇号，公证机构依法予以公证。摇号结果和小客车配置指标确认通知书在指定网站上公布。摇号时间或地点因故发生变化的，由指标管理机构提前向社会发布。  **第十五条** 申请人可以在指定网站或者通过电话方式查询摇号结果，小客车配置指标确认通知书可以由申请人自行下载打印或到指标管理机构对外办公窗口领取，作为指标证明文件。  　　单位和个人经摇号未取得指标的有效编码，自动转入下一次摇号基数。单位未取得指标的有效编码保留到当年12月31日，保留期满后重新申请。  　　申请人主动申请退出摇号的，其有效编码从摇号数据中删除。  **第十六条** 单位和个人应当自取得指标之日起6个月内办理完成车辆登记手续。逾期未办理完成的，视为自动放弃指标。  　　单位和个人在办理车辆购置税、购置税档案转移、二手车销售发票验证、车辆赠与公证等相关手续时，应当出示真实有效的小客车配置指标确认通知书。  　　国税部门核发车辆购置税完税证明、免税凭证或者办理车辆转入本市购置税档案转移时，工商部门验证二手车销售发票时，公证机构办理车辆赠与公证时，应当查验小客车配置指标确认通知书，经查验后在相应票证背面加盖“已取得指标”字样的印章。  　　单位和个人申请办理小客车注册、转移登记和转入本市的变更登记时，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分别查验车辆购置税完税证明或者免税凭证、二手车销售发票、车辆赠与公证书以及其他应当查验的材料和内容。  **第十七条** 单位或者个人出售、报废名下小客车后需要小客车更新指标(以下简称更新指标)的，不需要参加摇号，直接申请更新指标，以小客车更新指标确认通知书作为更新指标证明文件，自取得更新指标之日起6个月内办理完成车辆登记手续。逾期未办理完成的，视为自动放弃更新指标。  　　指标管理机构根据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供的出售、报废小客车转移、注销登记信息，核对申请人申请信息，审核通过后在指定网站发布小客车更新指标确认通知书。  　　具体办理程序和要求比照本细则相关规定执行。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八条** 承担审核申请信息和查验指标证明职责的相关部门，应当根据本细则的分工和工作实际，制订本部门审核标准、工作流程和操作办法并切实履行职责。工作人员未按本细则要求履行查验职责办理相关手续的，依法追究其责任。  **第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申请人采取不正当手段取得和使用指标的行为、政府部门及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进行监督和举报。指标管理机构、各审核部门和监察部门应当向社会公布举报电话，及时受理举报并认真履行监督职责。  **第二十条** 对于提供虚假信息、材料或者伪造、涂改小客车配置指标确认通知书、小客车更新指标确认通知书的，相关审核部门查实后应当向指标管理机构反馈，由指标管理机构取消该申请人的申请资格、收回已取得的指标或更新指标、三年内不受理该申请人提出的指标申请。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一条** 本细则下列用语含义：  　　（一）小客车包括小型、微型载客汽车及市人民政府公布的其他需要实施调控的车型。  　　（二）营运小客车是指《机动车行驶证》登记的使用性质为“出租客运”、“租赁客运”、“教练”的小客车。  　　（三）有效机动车驾驶证是指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核发的、具有驾驶小客车资格的驾驶证。  **第二十二条** 因法院判决、裁定及个人因婚姻、继承发生财产转移的已注册登记的小客车不适用本细则。有关机关依法办理转移登记。  　　在本细则实施之前，车辆销售经营者已经与客户签订小客车预售合同、收取预定金，并在规定期限内向商务部门办理备案的，不适用本细则。  　　在本细则实施之前，向有关部门申请进口境外人员自带车辆的，不适用本细则。  **第二十三条** 本细则自发布之日起实施，指标管理机构自2011年1月1日开始受理申请。  　　北京市交通委员会  　　北京市公安局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北京市监察局  　　北京市民政局  　　北京市司法局  　　北京市财政局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环境保护局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  　　北京市质量技术监督局  　　二〇一〇年十二月二十三日 |